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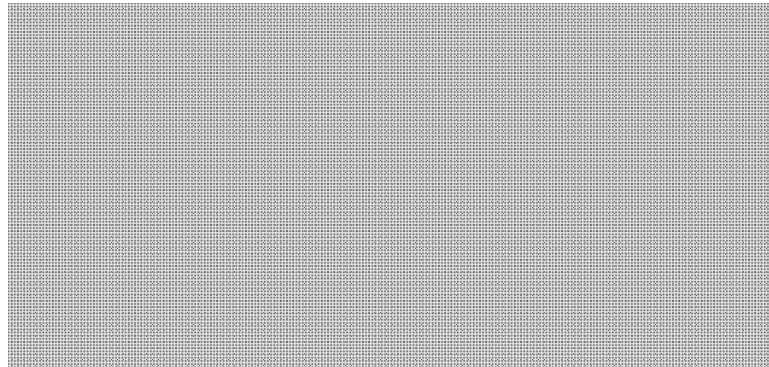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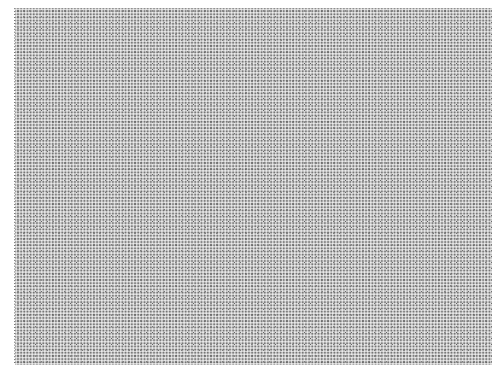
사 건 99가합3033 . 주주총회결의취소

원 고



피 고

[Redacted]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00. 3.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주주총회가 1999. 3. 20.에 한 별지 기재의 각 결의를 취소
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
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redacted], [redacted]의 각 증언(다만, 증인 [redacted]의 증
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redacted]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회사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고, 발행할 주식을 1주당
금 5,000원인 주식 160,000,000주(수권자본금 8,000억 원)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현
재 총 발행주식은 43,169,996주이고 모두 의결권있는 주식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
로서 10주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는 별지 기재 각 결의로 상정된 2개의 안건을 포함한 총 4개의 안건을
회의목적 사항으로 하는 제25기 정기주주총회(이하 주주총회라 한다)를 1999. 3. 20.
10:00경 울산 동구 [redacted] 소재 [redacted]에서 개최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감사보고서와 외부감사인 작성의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1주일 전에 본점
및 각 지점에 비치하였으나, 주주인 소의 [redacted]로부터 피고 회사의 정관과 이사회 의사록,



영업보고서의 열람 및 등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수여 받은 소외 [redacted] 이 주주총회 전날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피고 회사의 제25기 감사보고서 중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을 등사·교부받고, 외부감사인 작성의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 한다)의 등사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여, 소외 [redacted] 이 직접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열람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입장하는 주주들의 사진기 및 캠코더, 위험물 등의 반입을 제한하기로 하고 그 취지를 주주총회장 입구에 게시한 후, 10여명의 경비원을 배치시켜 소지품을 검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여성주주의 휴대가방을 검사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소외 참여연대 소속 간사 및 변호사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사진기 및 캠코더를 소지하고 입장하려다가 경비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잠시 소란이 있었으나 결국 사진기 및 캠코더를 피고 회사에 보관시키고 입장하였다.

마. 주주총회의 의장인 소외 [redacted] (이하 의장이라 한다)가 영업보고를 하고, 감사인 소외 [redacted] 이 감사보고를 하던 중, 원고 등이 질문을 하려 하였으나 의장은 지금은 질의, 답변하는 시간이 아니라 보고하는 시간이라며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 회사가 상정한 별지 기재 제1호 결의(이하 제1호 결의라 한다) 안건에 대한 의장의 설명이 끝난 후, 주주인 소외 [redacted] 이 출석주식수 중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인 있는지 등의 확인절차를 요구하여 의장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주주인 소외 [redacted]



이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동의안을 제기하였고, 주주인 소외 [] 은 피고 회사가 관계 회사인 [] 그룹에 2,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의장이 답변 하였으며, 주주인 소외 [] 은 피고 회사가 위 부당지원행위로 인하여 약 11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이사인 소외 [] 가 답변하였고, 주주인 소외 [] 은 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이유를 밝힐 것을 질의하여 의장이 답변하였으며, 주주인 소외 [] 이 표결로 넘어가자고 제안하여 이에 대한 재청이 있었고, 한편 원고 [] 등이 발언의 기회를 계속 요구하자, 의장은 차후에 중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질의해 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겠다고 하면서 제1호 결의 안건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하여, 위 안건은 출석 주식수 25,107,394주 중 찬성 주식수 24,601,760주(출석 주식수의 97.98%)로 가결되었다.

사. 피고 회사는 별지 기재 제2호 결의(이하 제2호 결의라 한다)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고 위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주주인 소외 [] 이 위 안건을 원안대로 결의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이 있었으며, 주주인 소외 [] 가 위 안건의 제28조 제1항(이사의 시차임기제), 주주인 소외 [] 이 위 안건의 제27조(집중투표제 배제) 등을 질문하면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어 원고가 피고 회사의 다른 주주들을 총회꾼이라 하면서 총회꾼을 동원해서 주주총회를 진행시킨다는 이유로 의장에 대한 불신임동의안을 제기하여 재청이 있자 의장은 계속 의사진행을 하면서 불신임동의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찬성이



출석 주식수의 0.19%, 반대가 출석 주식수의 97.62%로 부결되었다.

아. 의장불신임안이 부결된 후, 주주인 소외 [redacted] 이 원고에게 총회꾼이라는 발언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주주인 소외 [redacted] 이 다시 승인결의를 하자고 동의가 있어 이에 재청을 거쳐 제2호 결의 안건에 관하여 표결절차를 진행하던 중, 원고 등은 위 안건의 일부에 대하여만 반대하는 입장이고 피고 회사가 제안한 정관변경사항은 13개항에 이르는 등 그 내용이 복잡한 점을 이유로 각 변경 조항별로 심의 및 표결을 하는 축조심의 방식으로 하자고 동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다.

자. 한편, 원고 등은 피고 회사의 제2호 결의 안건 중 주식매입선택권을 신설한 제9조의2 제1항의 '100분의 15'를 '100분의 5'로, 같은 조 제4항의 '100분의 10'을 '100분의 1'로 각 변경하고,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개정안인 제27조 제3항 및 이사의 시차임기제를 도입한 제28조 제1항을 삭제한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다.

차. 그러나, 의장은 표결방법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피고 회사가 상정한 제2호 결의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여 가결되는 경우에는 원고 등이 제출한 축조심의방식에 관한 안건 및 수정동의안이 자동적으로 부결되는 것으로 하여 일괄표결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제2호 결의 안건은 출석 주식수 25,111,575주 중 찬성 주식수 24,564,232주(출석 주식수의 97.82%, 총 주식수의 56.9%)로 가결되었다.



카. 이어, 주주총회의 제3호 안건인 이사 선임의 건과 제4호 안건인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원고 등에게 등사·교부하여 주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 및 상법 제448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이고, ② 원고 등은 사진기 및 캠코더를 반입하여 주주총회가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를 촬영하려고 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금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성주주의 휴대가방을 검사하는 불법을 자행하였으며, ③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서 주주들로부터 질문이 있으면 의장 등이 답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원고 등의 발언요구를 묵살하였으며, ④ 제1호 결의 과정에서 원고 등이 준비한 24개의 질의사항 중 단 2개만 받아주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 등의 발언권을 보장하지 않아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⑤ 제2호 결의 과정에서 의장불신임안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이 그 불신임안에 대한 심의와 표결을 계속 진행하였으며, ⑥ 제2호 결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의방식 및 수정동의안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음에도 축조심의방식의 채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제2호 결의 안건과 수정동의안을 일괄표결방식으로 진행하였으므로, 결국 주주총회의 제1, 2호 결의는 그 결의방법이



현저히 불공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주주총회의 결의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 취소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주주총회에 있어서 의사의 진행방식 및 결의의 방식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이 없고 피고 회사의 정관에도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회의체의 운영 방식에 따라야 할 것인바, 그 방식에 사소한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는 결의를 취소할 수 없고 하자가 결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게 불공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 순서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은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상법 제4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1주일 전부터 본점 및 각 지점에 비치·공시하였으며 주주인 소외 [redacted]에게 열람을 시켜주었고, 한편 이 사건 감사보고서는 상법 제44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감사보고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거나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 등에게 등·초본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령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주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장에 위협물이



나 의사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의 반입을 금지하고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발언의 제지나 퇴장을 명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의장이 질서유지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 외에는 회의장 내에 카메라, 녹음기 등의 반입을 금하고 그 취지를 입구에 게시한 다음, 원고 등에게 그 반입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그 소지품을 검사한 것은 주주총회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조치라 할 것이다.

③ 영업보고나 감사보고가 끝난 후, 주주들로부터 질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사 등이 이에 답변하여야 하나,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이를 승인한다는 결의를 할 필요가 없는 이상 의장이 원고 등의 발언을 받아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④ 주주총회에서 발언을 하고자 하는 주주는 누구나 반드시 의장에게 요청하여 그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야 하는 한편, 의장은 가능한 한 발언을 원하는 주주들에게 고르게 발언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회의를 진행함에는 대체로 예정된 시간이 있을 것이고 의장은 그 시간 내에 회의를 마치도록 힘써야 하므로, 주주들의 발언요청이 있다고 하여 이를 무한정 받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진행의 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제1호 결의 안건에 대해 원고 등이 질의사항을 많이 준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모두의 질



의를 받아준다면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 발언을 한 5명의 주주들 중 원고 등 측에서 소의 [REDACTED] 2명이 발언하였으므로 원고 등의 발언권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었다고 보이는 점, 의장 및 이사가 위 안전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의장은 추후 서면으로 질의하면 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겠다고 후속조치를 취한 점, 제1호 결의 안전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장이 원고 등의 더 이상의 발언을 제한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제1호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⑤ 의장에 대한 불신임동의안이 가결되었음에도 당해 의장이 계속하여 의사진행을 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 동의 및 재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대한 의사진행은 당해 의장이 계속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⑥ 의장은 주주들의 의사가 공정하고 원만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안의 내용과 질의 내용,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심의 및 표결방법을 정할 수 있는바, 원고 등이 제2호 결의 안전에 대하여 축조심의방식에 의할 것을 동의하여 이에 대한 재청이 있었고 또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고 재청이 있었으므로, 일반적인 회의 진행방식에 따른다면 의장으로서 먼저 원고 등이 제안한 축조심의방식에 대하여 주주총회에 그 가부를 물어야 하고 나아가 수정동의안을 먼저 표결에 붙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바로 제2호 결의 안전과 수정동의안을 일괄표결방식으로 진행한 것은 절차상



으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결의방법상의 하자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가에 관하여 살펴건대, 실제로 심리할 안건은 피고 회사가 제안한 제2호 결의 안건과 이에 대한 원고 등이 제출한 수정동의안 2개인 점, 원고 등의 축조심의의 동의가 있기 전에 이미 다른 2명의 주주에 의하여 제2호 결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승인결의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던 점, 수정동의안이 제출되기 전에 이미 제2호 결의 안건 중 제27조와 제28조 제1항은 다른 주주에 의하여 심의되었는 점, 원고가 의장 불신임동의안을 제출하여 표결하는 등에 의하여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어 가고 있었던 점, 제2호 결의 안건에 대한 표결절차가 진행 중에 원고 등으로부터 축조심의 및 수정동의안이 제출된 점, 피고 회사가 제출한 제2호 결의 안건이 출석 주식수의 97.82%, 총 주식수의 56.9%의 찬성으로 가결된 점에 비추어 축조심의의안이나 수정동의안을 먼저 표결에 붙였더라도 가결되었으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상장회사들의 통상적인 주주총회 운영과정 등을 고려할 때, 의장이 원고 등이 제출한 축조심의의안이나 수정동의안을 먼저 표결에 붙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제2호 결의를 취소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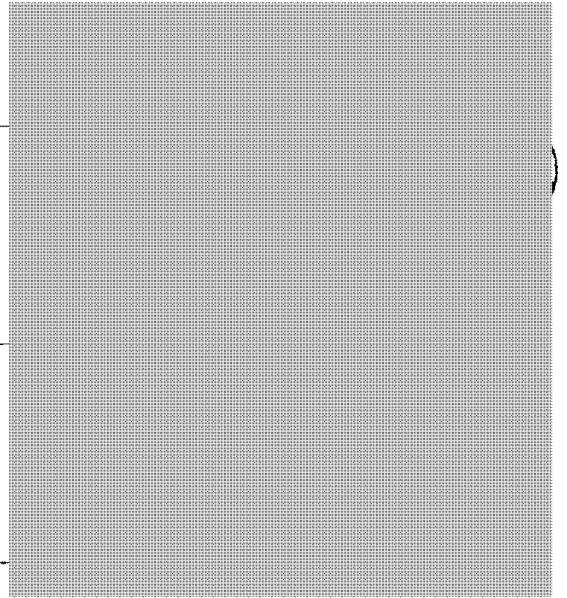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1-02

2000. 4. 12.

재판장 판사 은상길

 판사 최용호

 판사 신혁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1-02

주 주 총 회 결 의

1. 제25기(1998. 1. 1. ~ 1998. 12. 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결의
2. 정관일부변경 승인결의 끝.

